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2. 4 선고 2019가단1211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경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길중

변 론 종 결 2021. 1. 14.

판 결 선 고 2021. 2. 4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상가 E호 소재 F 주식회사 거여지점에 관하여 2016. 12. 21.

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을 101,400,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101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2016. 11. 9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드단65654호로 C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,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. 10. 12. ‘원고는 C과 이혼하고, C은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01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, 장래 양육비로 2017. 5.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(2021. 7. 8.)까지 1,000,000원씩 매월 1일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쌍방이 의정부지방법원 2017르81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. 9. 12.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C은 서울 송파구 D상가 E호에서 ‘F 거여지점’(이하 ‘이 사건 회사’라 한다)을 운영하고 있었는데, 위 이혼 등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. 12. 21.경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고,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, 2019. 2.경 폐업을 한 후 2019. 4.경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채무초과상태이던 C이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한 뒤 피고가 앞으로 그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는바, 피고와 C 사이의 위와 같은 영업양수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영업양수는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영업권 평가액 범위 내에서

피보전채권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영업양도의 존재 여부

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의 승계원인 중 ‘상속’의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 명의 자체를 변경할 수 있고, 영업양도와 같은 그 밖의 승계원인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킴과 아울러 사업을 승계한 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명의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 명의 자체를 사업을 승계한 자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
살피건대,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C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고,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점, 피고는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에서 그 시설, 설비를 이용하여 C이 하던 렌터카사업을 동일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2016. 12. 16.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양수(이하 ‘이 사건 영업양도’라 한다)하였다고 할 것이다.

2) 피보전채권의 성립

살피건대, 갑 제1,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, 즉 ① 원고는 2003. 4.경부터 C과의 사이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여 온 점, ②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, ③ 원고는 2016. 11. 9. C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,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, 2017. 10. 12. 위 1심 법원이 ‘C은 원고에게 2003. 4.부터 2017. 4.까지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로 101,400,000원의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원고와 C이 항소하였으나 2018. 9. 12.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미

양육비 지급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, 원고가 2003. 4.경부터 혼자 자녀를 양육한 사실에 대하여 C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되었으므로,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있다 할 것이다.

3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가)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,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,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.

살피건대,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명의변경을 한 2016. 12. 21.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, 피고가 C의 무자력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는바, 원고가 C에게 양육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C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, 이에 따라 채무자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2012. 3.경 C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5,000만 원을 투자하고, 그 후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등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.경 C의 건강상 문제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피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지 영업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, 피고의 투자사실, 동업관계 유무 및 내용, 동업관계 청산 내용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)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

가)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)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

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,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C에게 다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. 그러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취소하고, 가액의 반환을 명하기로 한다.

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재산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바, 갑 제4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G 주식회사(구 F 주식회사)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, 2016년도 수입액은 307,366,681원, 2016년도 비용 등 지출액은 152,688,995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에 따라 양도된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다)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은 과거 양육비채권 101,400,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1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,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유진